

# “보증서” 100% 신뢰하는 길은



김중서 / 공학박사 · 중재인

인적 담보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증이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이라는 3명의 주체가 참여하여 의무를 수반하는 계약관계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은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자의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공여와 채권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증인의 보증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사례를 통해 보증 책임 범위를 살펴보자.

설비업자 A는 종합건설업자 B로부터 『00아파트 건설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5억, 계약이행기일 2011.9.30)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보증한 보증서(보증금액 6억)를 담보로 받았다. 당초 계약이행기일이 다가왔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A와 B는 계약 이행 기일을 2개월 연장(2011.11.30)하고, 계약금액을 5억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 상 보증기관 연장, 보증금액 변경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A는 이 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약금액 중 15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B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는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억 원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과연 A는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억 원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지 못했다.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그 채무, 즉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담보하여 설비업자에게 보증해 준다. 이때 채무자는 보증으로 신용도를 증진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대신 보증기관은 채권자인 설비업자에게 거래상의 안전을 보장한다.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채권 확보 차 담보물로 제공받은 설비업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게 불이행 책임을 묻고, 하도급대금 이행을 촉구한다.

그런데, 보증서를 담보로 갖고 있는 설비업자 A가, B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지급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설비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서 상의의보증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보증사고 발생 후, 보상심사에 필요한 적법한 설비업자의 문서가 제출되고, 보증기관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서를 받게 되면, 보증 불이행 시 내가 원하는 바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보증금액·계약이행 기간·특기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약관을 유심히 살펴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면책사유·협조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액이나 계약이행 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반영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

면 얼마나 황당할까?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A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한다. 그렇다면, 보증서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보증서를 통하여 원하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다면 말이다. 보증서만 소지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익숙하지 않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해결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의 사례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계약금액에 변동이 생기고 계약기간이 늘어났는데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무조건 보증기관에 해결해 달라고 한다. 보증서상 보증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보증기관에 생떼를 쓰기도 하고, 관계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증약관 등에 명시된 스스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답답한 노릇이다.

설비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서 상의의보증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보증사고 발생 후, 보상심사에 필요한 적법한 설비업자의 문서가 제출되고, 보증기관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서를 받게 되면, 보증 불이행시 내가 원하는 바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보증금액·계약이행 기간·특기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약관을 유심히 살펴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면책사유·협조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액이나 계약이행 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반영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지급이 거절된 사유를 보증인에게 전가하고 불평불만만 하기 이전에, 스스로 보증서 상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증서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하고, 보증기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보증서를 100% 신뢰하게 하는 길이다. 상생의 길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